

第 14 回 臨時會

2005. 3. 23(水)

- 계룡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위반자
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—

檢 討 報 告

鷄 龍 市 議 會

專門委員 申 東 熙

- 계통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위반자
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—

檢 討 報 告

□ 改定背景

-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에 의거 시행해 오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와 관련하여
- 그동안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개정 하려는 것임

□ 主要内容

-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 회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및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차등화 하고 대폭 하향 조정(안 별표1)
-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을 문화상품권 등 현물도 지급토록 함(안 제4조)
- 준용 규정을 “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”에서 “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”으로 변경함(안 제18조)

□ 檢討意見

- 2004. 1. 1부터 시행중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제도가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던 바,
-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마련한 “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”에 따라 현실에 부합 되도록 정비 하려는 것으로, 상위법규에 저촉 되거나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됨
- 다만, 과태료 부과 금액을 종전 보다 50~70% 대폭 인하 하는데 따른 세입결손 등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 됨